

11. 不實工事豫防對策

(關係機關會議資料)

資料提供：建設部

지난 7월 15일(금)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관계부처, 시·도, 건설부산하 지방청 및 4개공사등의 관계관 35명과의 「부실공사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자료를 게제합니다. 〈편집자주〉

I. 머릿말

-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80년대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
- 건설업은 이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함으로서 제조업, 금융업 다음가는 세번째 규모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은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적당주의」와 최근 3D업종 기피 현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불신풍조가 면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부실공사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

신을 가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수립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에 따라 그간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등 법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한데 이어, 금년에는 「성실시공원년」과 「부실공사추방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조사·설계, 감리/감독, 시공등 건설과정의 전단계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관리하므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부실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부실공사 예방대책」 방안을 수립,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음.

- 따라서 오늘 이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정부가 금년하반기부터 2단계 조치로 추진할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설명드리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 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함.

II. 「부실공사 예방대책」

1. 조사·설계부문

- 실시설계용역시 기능공과 현장종사 초급기술자들이 구조물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상세히 작성(이하 상세설계도라 함)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발주처는 법령개정이전에 다음사항을 조치

－ 신규설계시는 용역과업지시서에 상세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준공검사시 이를 철저히 확인

- ①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正負)철근등의 유효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축,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

- ② Spacer 또는 Chaira-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 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
 - ③ Spacer 또는 Chaira-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④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표기
 - ⑤ 연속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공순서 및 시공법등을 도면상에 명기
 - ⑥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업체가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필히 위의 상세설계도와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 현장감독관(이하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
- ① 수급자는 구조물의 철근배근도, 신축이음, 콘크리트타설순서등 시공전에 현장 기능공 등 작업자가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뒤 이를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공
 - ② 각종 시공상세도 작성예시(14~16쪽 참조)

- 교량등 구조물 설계시 설계법(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콘크리트품질 관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조물도면 우측상단에 설계법을 명시한 후 시공요망
 - 신규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명기, 준공검사시 확인 철저
 - 현재 시공중인 경우는 도면에 표시후 시공
- 용역설계 참여기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최종보고서에 모든 참여기술자 및 업무수행사항등을 기록·비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용, 소지자격증 종류 및 번호등을 기록
 - 용역업체는 용역설계 착공제 제출시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발주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확인
 - 과업수행 기간 및 준공검사시 확인

- 참여 기술자의 변동등이 있을시도 동일 조치

— 용역설계 발주기관은 필히 보고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만 기술자의 경력을 인정, 개별 경력서에 기록·보존

※ 시행중이거나 신규용역 모두 조치 요망

◦ 부실설계업체(부실설계 : 전체 40.9%)에 경각심을 주어 설계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설계를 한 용역업체 및 설계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용역입찰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임.

— 현장점검 및 각발주기관의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부실설계 내용을 Data Base화

—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여

— 3억원 이하 : 일정벌점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 제한

— 3~5억원 : 사전입찰자격(P.Q)평가시 감점

— 5억원 이상 : 기술제안서(P.P)평가시 감점

◦ 용역설계비가 현행 요율보다 적은 수준이고 용역기간도 불충분하여 설계부실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조치하도록 EPB, 내무부 및 관계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고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 각발주기관에서도 설계용역비를 현행기준에 부합도록 협조요망

— 설계비용을 현기준 요율대로 편성, 지급

— 토질등 기초조사비는 조사량에 맞추어 지불

— 조사설계 완료후 민·관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간과 현지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

〈도로인 경우 민원 발생요인 예시〉

- 통로암거 신설 및 추가설치요구
- 각종 용배수시설의 신설, 추가 및 위치변경

- 방음벽 설치 및 개선
- 우회도로 개설
- 가스, 통신시설등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조사등

◦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설계시 사전에 현지를 충분히 답사하여 설계구간(연장), 토질등 기초조사개소 및 수량등을 정확히 산정한 후 예산요구함으로서 실제 용역설계시 예산 부족이 없도록 협조 요망

2. 감독·감리부문

◦ 현장감독관/감리자의 철저한 현장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감독관 근무상황부(판)를 비치, 운영 요망

- 감리자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외출, 조퇴등 근태상황등을 기록, 비치(붙임 양식 1)
- 근무상황판을 감독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하고 당일현장 근무위치, 업무내용등을 기록(붙임 양식 2)
- 감리자가 현장이탈시는 필히 발주기관(또는 업무담당관)에 그 사유등을 보고,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
- 감리자가 현장 무단이탈 또는 결근시는 시공업체 현장대리인등이 즉시 발주기관(또는 업무담당관)에 보고

◦ 감리자의 수행업무를 한개 또는 수개 현장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담당관이 각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비치(붙임양식 3)

◦ 감리자는 시공전 설계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여

◦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행전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를 의무화

◦ 부실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용역입찰시 불이익처분

– 부실시공관련 및 부실예방대책 불이행 등 부실감리 내용을 DATA BASE화

– 부실내용에 따른 벌점을 부여

– 3억원 이하의 감리용역에 대한 일반공개경쟁시 입찰참여 제한

– 3억원 이상의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감점평가

※ 벌점기준은 별도 수립중

◦ 감리자의 자질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감리교육제도 강화 및 의무화

– 토목, 건축, 기계 설비등 분야를 구분 실시

– 특급, 고급, 중급, 초급반으로 구분 교육

– 직무(기술, 행정) 교육강화 및 특별정신 교육강화

– 시험담당 감리자에 대한 시험교육

3. 시공부분

◦ 공사현장마다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 수립, 이를 집중관리한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조치(붙임양식 4)

– 레미콘, 아스콘등의 품질확보계획 수립(공동사항)

– 각 현장별 부실발생 취약요소를 도출, 예방대책을 수립

※ 감리/감독관, 업무담당관, 업체 합동으로 수립

◦ 공사착수전 시공업체가 부실설계요인등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도록 하여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부실을 예방하고 발주기관은 시공 및 감리업체의 검토결과를 설계용역업체에 확인시킨 후 시정조치 및 불이익처분조치

- 시공업체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도록 의무화

〈예시〉

- 특수 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 철근 임 길이 및 위치도
- 구조물의 모파기 상세도
-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 옹벽, 콘크리트축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을 명확히 하여 시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상세 도면 등

- 현장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

-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 근무 철저
- 안전관리 담당감리자 지정
-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 이행
 -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 특별(우기, 해빙기등) 점검계획
 - 년 1회 이상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100억 원이상)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 감리자의 시공업체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태 철저 지도 · 감독
- 감리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모든 건설업체가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 : Total Safe-

ty Control)을 작성, 활용토록 적극 권장

- 콘크리트 타설직전에 물을 추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업무에 철저요망
- 현장종사 회사직원(원청자, 하도급자를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붙임양식 5, 6)
 - 매일 작업시작전 특별교육실시
 - 전일 작업분석·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등
- 품질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의 품질확보가 곤란할 경우 시공회사 자기채김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현장 프랜트(BATCH PLANT)를 설치, 자체 생산 가능하도록 조치
 - 당초 용역 및 발주설계시 아래사항에 대한 품질확보 가능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매 또는 자체생산결정
 - 장시간 운반으로 품질변화 우려
 - 일일 최대타설량 충분 공급가능 여부
 - 조·세골재 골재원 수시 변경 가능성 여부
 - 불량품 생산 빈도등 과거 지적실태 등
- 모든 건설업체가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 각 과정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 계획서(TQC : Total Quali-

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획득의 필수사항

4. 레미콘/아스콘 부문

- 레미콘생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등에 따라 타설현장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전에 따라 배합설계를 전면 재설시한 후 사용토록 조치
 - 각종 배합설계는 현장감리자(감독관) 시공업체, 레미콘공장합동으로 실시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타설 방법에 따라 각각 Slump치를 달리한 배합설계 실시
 - 믹서트럭으로 부터 직접타설
 - 펌프카로 타설
 - 동일 타설방법일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 25°C이하, 또는 이상시 각각 Slump치를 달리한 배합설계 실시
 - 구조물 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배합종류를 필히 기록·비치(붙임양식 7)
 - 골재의 형상, 품질과 세골재의 조립율이 변겨될 경우등에는 필히 배합설계 재설시
-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을 반입한 생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중에 있으니 부실전담부서등의 현장점검시 해당 생산공장 및 부근 공장의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월간 불량레미콘 반입회수, 량 및 사유등을 현장감독관이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은 우리부 및 공업진흥청에 통보, 제재등 의법조치하도록 요청
 - 우리부는 불량 레미콘현황을 집계 월말 및 년말에 명단공개 방안을 검토
 - 고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적정히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후 사용
- 현장에서 반출조치된 불량레미콘/아스콘이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

-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반출 조치
 -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 및 트럭운전사는 당일 현장반입을 금지
 - 불량품의 현장 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모든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 확인하여 기록 유지
 -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비치
 - 시·도 등 공장허가관서는 폐기장을 설치, 불량품을 폐기하는 방안 적극 추진 요망
- 레미콘공장의 레미콘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케하거나 건설재료시험기사등의 채용의무화를 공진청과 협의중에 있으니 시·도는 관련업체를 적극권장 요망
- ※ 벌칙강화 및 세분화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하여 레미콘 품질확보도록 공진청과 협의 중임.

5. 의식개혁/기타부문

- 중앙부처 및 지자체등 건설공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부실공사방지 전담부서 및 부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관공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요청
 - 자체 부실공사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우리부 수립 부실공사예방대책 등을 전파 및 이행
 - 수실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등에 대한 부실 및 처벌내용과 별점등을 우리부에 통보(우리부에서 자료를 접수하여 부실별점제에 적용)
 - 현장점검시는 해당레미콘공장 및 주변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결과 확인후 사용토록 조치
 - 현장점검시는 안전관리 및 감리자의 감독업무 이행실태 등을 동시 철저 확인
-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기능공의 채김 및 견실시공의식이 부

실공사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망

- 지방청등 각 발주기관에서 현장 시험사 및 감리자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협조 요망
 - 매월 이틀(예 3, 4일)을 교육일자로 지정, 2개조로 나누어 교육
 - 교육평가를 실시 저득점자 집중관리 또는 교체
- 공사 준공검사 이전(약 2개월)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비준공검사를 필히 실시 토록 조치
 - 예비 준공검사원 임명부 필히 비치
 - 지적사항은 준공검사시 필히 확인
 - 허용기준치내이나 부족시공분은 감액 조치
 - 공사기간내에 예비 준공검사 기간 및 지적사항 조치기간을 필히 포함등
- 업체 독자적으로 수급공사의 시공상태를 수시점검 및 기술지도할 수 있는 부설공사 점검전담부서 설치, 운영토록 각발주기관에서는 적극 권장
- 책임시공의식 제고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곳에 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교량등 주요구조물현장에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조치
 - 공사구간 또는 인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성실시공 안내” 간판을 설치(규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9] 제2호 가목의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참조)
 - 상단에 “성실시공안내”
 - 공사명 :
 - 시행청 :
 - 원·하도급 회사명, 현장소장명, 본사 및 현장사무실 전화번호
 - 감리업체명 및 책임감리자명, 본사 및 현장 전화번호

※ 공사구간이 긴 현장(도로, 하천 등) 2km내외에 설치, 단지 · 댐작업장이 넓은 현장은 주변 여러곳에 설치

-교량등 주요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 간판을 설치(규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 제43조 [별표9] 제2호 가목의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참조)

- 상단에 “책임시공 안내”

- 구조물명 :

- 시 공 자 : 원도급자, 하도급자

- 시공책임자 :

- 기능공책임자 : (예) 거 푸 집 : ○○○

철근조립 : ○○○

콘크리트 : ○○○동

※ 공사현장 시종점부등에 설치된 공사안내간판을 일제히 재정비하여 주민등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III. 협조사항

- 이 부실공사예방대책중에서 현재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법령 또는 지침등에 모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법령 등 개정중에 있으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이 대책을 포함한 자체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 이행하시기 바람.
- 관계부처 및 시 · 도등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드린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어 견실시공풍토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각 산하기관에 시달 및 전파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부에서는 지난 5월 부실전담부서/부실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실전담부서/신고센터를 설치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기관은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금년 하반기 부터는 경미한 부실사항도 부실별점제도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음.

– 우리부에서는 금년도부터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실지적사항을 DATA BASE하고 있음.

– 본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처 및 시·도등의 발주기관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지시 및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시 이를 확인할 계획이니 철저한 이행 요망

- 건설공사 설계서의 특별시방서 작성 철저

〈필요성〉

–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등 발주시 계약문서로 사용할 중요한 내용임.

– 일부 실시설계용역시 작성된 시방서의 경우 종합보고서상에는 공사시행 내용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설계도서나 시방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계약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히 작성필요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혼동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일반·특별시방서를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시공시 혼란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함.

– 특별시방서는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건설시장개방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니 지금부터 철저 작성 바람.

〈세부작성요령〉

–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신공법 적용시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등을 특별히 명시

하여야 할 사항

- 현장 품질시험방법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해야 할 사항
-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표지병(Cat's Eye), 야광표지주(Delieator)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재질, 야광조도등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워 특별히 명기하여야 할 사항
- 현장 도착후 콘크리트 타설방법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등 명기

※ <예시> 25-210-8±2.5

25-210-12±2.5(펌프카 타설용)

※ 현행 규정(KSF4009)상의 Slump치의 허용범위

Slump치(cm)	허용범위(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1.5

- 레미콘 혼합후 타설시까지의 소요시간을 명기·준수 요망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상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설계 또는 관급시 실측운반시간등을 고려하여 설정관리 요망(시방서 규정이내)

- 아스콘운반시 특히 표면온도저하 방지수단등에 대한 유의사항
-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등

◦ 책임감리의 내실화를 통한 견실시공 풍토조성은 우리 건설업계의 당면과제이므로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책임감리 도입시기가 일천하여 감리자 직무수행 능력부족과 감리자·시공자간의 역할분담등 제도정착 초기단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감리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정을 개정하고 『감리수행지침서』와 『감리대가기준』을 개정하는등 현장 중심의 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일선 발주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감리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 감리수행지침서 개선사항등 제도상 미비점을 적극 우리부에 개진하여 주시고
 - 정기적으로 감리자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키는 한편,
 - 감리자가 공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심하여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리업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부실감리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와 감리자가 엄격히 제재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부에서는 부실공사근절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실공사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IV. 참고사항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부실용역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용역설계를 부실하게 한 업체 및 참여기술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설계용역결과가 우수하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반영할 수 있는 「설계용역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건설기능공 양성교육시 우리부 간부등이 실사례 중심의 강의를 하도록 노동부와 협의하였고 기능공 교육직종도 대폭 늘려주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건설기능공을 자체 양성하는 건설업체에 특별정신교육 실시 및 직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 건설협회 등에 기조치하였음.

-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견실시공의식 및 책임감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방안을 건설협회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